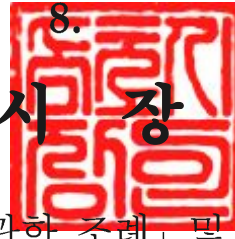


2013년 하반기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속초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를 통한 항만 활성화를 위해 『2013년 하반기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. 8.

속 초 시 장



- 근 거 : 「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시행규칙
- 지원대상 : 화주, 국제물류주선기업, 항만하역기업, 해상운송기업
- 지원범위

구 분	대 상	지원기준	비 고
화물유치장려금	화주, 국제물류주선기업	1TEU당 50,000원	공컨테이너 제외 -신규화물 : 최초1년 -순증화물 : 매년
	해상운송기업, 항만하역기업	1TEU당 30,000원	공컨테이너 제외 -신규화물 : 최초1년 -순증화물 : 매년
항로운항장려금	해상운송기업	1항차당 10,000,000원	
손실보전금	해상운송기업	손실액의 50%이내 5억원 이내	

- 산정기간 : 2013. 7. 1 ~ 2013.12.31 / 상반기(3.19 ~ 6.30) 미신청분
- 지원금 신청접수
 - 접수기간 : 2014. 1. 9 ~ 2014. 1. 31
 - 접 수 처 : 속초시 속초항물류사업소 환동해물류팀
 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접수마감일내 도착분까지 유효)
 - ※ 우편접수 :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27 속초항물류사업소
 - 제출서류 : 신청서, 증빙자료, 사업면허증사본, 통장사본 각1부
 - ※ 화물유치장려금 증빙자료 : 선하증권 사본, 수출입신고필증사본, 보세운송 신고필증사본(해당되는 경우) 등

※ 손실보전금 증빙자료 : 당해연도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감사보고서

⇒ 속초시와 체결한 「협약서」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
(4.30) 이내 신청

○ 그 밖의 사항

- －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중복 지원 불가
- －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

○ 접수문의

- － 속초시청 속초항물류사업소 환동해물류팀(☎ 033-639-2694)